

32. 약속어음금 청구

☐ 약속어음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62,167원 및 그중 67,236,6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으로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우, 선하증권발행인이 은행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으로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로서는 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7452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어음상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의 관계(=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 및 어음소지인이 위조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 어음상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소지인으로서 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 때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그 액면 금액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99,965,750원 및 그중 21,353,250원에 대하여는 2014. 9. 7.부터, 22,187,5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9.부터, 56,4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5428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구에 의하여 어음을 환수한 경우, 재소구에 관한 권리관계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당연히 재소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상환을 받은 소지인이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소구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448 판결)

[참조판례] ① 약속어음의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어음상 책임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

②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변조 전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소지인이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소지인이 약속어음이 변개된 후에야 비로소 그 어음을 취득하였고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 제시 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종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806,072원 및 그중 19,827,072원에 대하여는 20〇〇. 5. 8.부터, 25,979,000원에 대하여는 20〇〇. 5.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로 어음상 배서를 함에 있어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 배서의 효력(무효)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의 배서를 함에 있어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〇〇은 97,476,500원 및 그중 56,226,500원에 대하여는 2014. 4. 8.부터, 4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7.부터, 피고 주식회사 〇〇유통은 22,977,859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부터, 피고 〇〇〇〇유업 주식회사는 94,541,2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상호신용금고가 상업어음만을 할인하여야 하는 대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어음할인취득상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상호신용금고가 상업어음만을 할인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용으로 발행된 어음이나 유통어음을 잘못 할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약속어음의 수취인 회사의 직원이 제3자와 공모하여 수취인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제3자 명의의 배서를 거쳐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사안에서, 일부는 어음취득상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일부는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약속어음의 수취인 회사의 직원이 제3자와 공모하여 수취인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제3자 명의의 배서를 거쳐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사안에서, 배서상 기재의 문제점이 있는 어음에 대하여는 상호신용금고의 어음취득상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배서상 기재의 문제점이 없는 어음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0731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그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1.부터,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1.부터 각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대표기관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법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광주지법 1999. 4. 2. 선고 97나4506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광○○에게 86,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5.부터, 원고 박○○에게 25,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부터 각 2013. 9.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55217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예비적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〇〇. 12. 23.부터, 나머지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〇〇. 1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단, 주위적으로 약속어음 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함).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657,391,972원 및 그중 1,362,378,772원에 대하여는 20〇〇. 5. 20.부터, 2,862,915,7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1.부터, 1,432,097,5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2.부터, 각 20〇〇. 6. 27. 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어음상의 권리자가 어음을 소지하지 않고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어음상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상의 채무자에게 자기가 어음상의 권리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고, 어음상의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어음상의 채무자에게 어음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그 의사에 반하여 어음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아 그 소지인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어음상의 권리자가 미리 어음을 어음상의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 등 어음상의 채무자에게 어음상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백하고, 나아가 이중지급의 위험성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자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청주지법 1999. 9. 30. 선고 99나22 판결 ; 상고)

☐ 약속어음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2,53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25.부터, 12,53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 20.부터 각 2010. 3. 7.까지는 연 6%의, 같은 달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지 여부 수취인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28313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30.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제약회사의 지방 분실장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한 경우,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어음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채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권의 보전 여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42579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비법인사단인 선어중매조합의 대표자의 위임에 따른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 판결)

❖ 약속어음금등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김○○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이○○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이○○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어음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유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서울북부 1997.8.7. 선고 96가단37807 판결)

[참조판례]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를 보충하여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권판결 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과,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백지어음에 대한 채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를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에 규정된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백지어음의 채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부터 2011. 10. 5.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차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2,9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약속어음상의 채무자가 그 어음공정증서의 정본과 등본을 모두 소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증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위반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피고의 피상속인과 원고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공정증서의 정본은 당연히 어음상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어음상의 채무자 측인 피고가 그 정본과 등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원고가 공정증서의 정본과 등본 모두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어음공정증서가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족간인 원고와의 합의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공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증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그에 합당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3999 판결)

㊦ 어음금등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 원고가 정리회사 제일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400,000,000원을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예비적으로 : (제1차 예비적 청구) 피고는 소외 ○○은행 ○○중앙지점이 2008. 6. 15. 소외 제일알루미늄 주식회사로부터 예치받은 400,000,000원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라. (제2차 예비적청구) 소외 한국티타늄 주식회사가 2008. 6. 15. 소외 ○○은행 ○○중앙지점에 예치한 그 400,000,000원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약속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에 동의할 것을 구하거나 혹은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약속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어음금 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어 어음소지인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라고 소구할 수 없고, 또한 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선택적 병합)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 약속어음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1,308,612원 및 그중 22,400,008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20,494,204원에 대하여는 그 해 4. 1.부터 29,414,400원에 대하여는 그 달 27.부터 19,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해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5,559,453원 및 그중 20,991,858원에 대하여는 2015. 11. 29.부터, 19,046,361원에 대하여는 그 해 12. 5.부터, 27,752,850원에 대하여는 그 달 26.부터 17,768,384원에 대하여는 그 달 12.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당해 배서의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위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취득자에 해당하며,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

㊦ 어음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발행인)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